

[별지 제43호서식] <개정 2008.2.29>

후원금 기부자 명단

(구분:)

기 부 자					기부일자	기부금액	비고
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직업	전화번호			

「정치자금법」 제40조제3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40조제3항에 따라 후원금 기부자의 명단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후원회 회계책임자 ○○○ (인)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주 : 1회 3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자와 연간 300만원(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및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연간 500만원)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자는 "구분"란에 "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", "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", "연간 500만원 초과 기부자"로 각각 구분 기재하여 별도로 작성·제출합니다.